

[별지1]

기	타	라. 영화촬영 및 비디오촬영	1건	10,000원
---	---	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
제9조(보증금) ① <u>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.</u>		제9조(보증금) ① <u>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30 %를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.</u>	
②~③(생략)		다만, 시민을 위한 예식장 사업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	
(별표1)중		②~③(현행과 같음)	
		(별지1)중	
기 타	라. 영 화 촬 영 및 비 디 오 촬 영	1건	<u>30,000원</u>
			<u>10,000원</u>

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7
의 결	93. 12. 24
년 월 일	(제25회)

제출년월일: 1993. 12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이유

-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중 기금 출납공무원과 분입기금 출납공무원의 직위를 현 직위로 개정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시·구 의료보호 회계공무원 명칭에 있다.

- 시 “의료보장계장”을 “사회계장”으로 (안 제3조 제1항)
- 구의 “사회계장”을 “의료보장계장”으로 개정(안 제3조 제3항)

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회계공무원의 임명) 제1항 중 “의료보장계장”을 “사회계장”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“사회계장”을 “의료보장계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
제3조(회계공무원의임명) ①	제3조(회계공무원의임명) ①	제3조(회계공무원의 임명) ①	제3조(회계공무원의 임명) ①
..... 기금출납공무원을 시의	 기금출납공무원을 시의	 기금출납원공무원을 시의	 기금출납원공무원을 시의
<u>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.</u>	<u>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.</u>	<u>사회계장으로 한다.</u>	<u>사회계장으로 한다.</u>
② (생략)	② (생략)	② (현행과같음)	② (현행과같음)
③	③	③	③
..... 분임기금출납원을 구의	 분임기금출납원을 구의	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 구의	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 구의
<u>사회계장으로 한다.</u>	<u>사회계장으로 한다.</u>	<u>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.</u>	<u>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.</u>